

〈서 평〉

金容漢 著「物權法論」

1971년에 「民法總則論」을 出刊한 金容漢 教授가 今年(1975年) 「物權法論」을 發刊한 것은 우리 나라 民法學界의 一大快事이다. 한때 우리 나라에서 法書의 出版이 次第 活潑한 때도 있었지만 그 大部分이 受驗參考書의 性格을 가진 것이어서 學術書籍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그것이 近年에 와서는 法書의 出版 自體가 시들해졌다. 그러한 狀況下에서 金教授의 力作으로 講義書가 出刊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대견스러운 일이다. 같은 해에 郭潤直 教授는 全訂版 物權法을 出刊하였으니 金教授의 「物權法論」과 더불어 1975年度 民法學界의 二大收穫이라고 할 수 있다. 法書의 出版이 全般的으로 시들해졌거니와, 그중에서도 특히 民法은 法學徒들이 상당히 敬遠하는 傾向이 있다. 그런데도 金・郭 兩教授가 이 分野에서 力著를 내 주신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金教授의 「物權法論」은 그의 「民法總則論」의 姊妹書로서 그 叙述의 內容과 體裁는 著者 自身이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民法總則論」에 있어서와 같다. 즉

첫째로, 종래의 學說을 충분히 紹介한 다음에 著者 自身의 見解를 밝히고 있고, 大法院 判例를 最大限으로 引用하고 있고,

둘째로, 民法 全編에 걸쳐서 相關되는 點을 모두 考慮하였을 뿐만 아니라, 民法特別法이나 民法附屬法도 關聯시키고 있으며,

셋째로, 獨・聯・佛法은 물론 그밖의 外國法에도 論及하고 있고,

넷째로, 곳곳에 「補充說明」을 붙였다.

그러나 「物權法論」에 있어서는 激變하는 社會 經濟事情下에서 「物權法研究의 現代的特殊性」을 著者 나름대로 意識하면서 執筆하였다고 著者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著者는 특히 「解釋法學的인 理論의 整備 또는 再構成」에 重點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著者는 이 책의 編成을 4編으로 나누고 있다. 즉,

제1편 物權法總論은 제1절 物權制度一般, 제2절 物權法의 範圍와 特質, 제3절 物權의 種類, 제4절 物權의 一般의 效力, 제5절 物權의 變動, 제6절 物權의 消滅, 제7절 不動產物權의 公示, 제8절 動產物權의 公示, 제9절 明認方法을 內容으로 담고 있고,

제2편 基本的物權에서는 제1장 占有權과 제2장 所有權을

제3편 用益物權에서는 제1장 總論의 問題에 이어, 제2장 地上權, 제3장 地役權, 제4장 傳

質權을 다루고,

제4편 擔保物權에서도 맨처음에 제1장에서 總論的問題를 설명한 다음에, 제2장 留置權, 제3장 質權, 제4장 抵當權, 제5장 財産權移轉이 따르는 擔保制度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特色으로서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은 法制史的 및 比較法的 說明이 豊富하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登記制度의 沿革을 詳細하게 說明한 것은 他에 類例를 볼 수 없는 것으로 훌륭한 일이다.

또 各制度의 社會經濟的 機能을 상세히 說明하고 있는 것도 큰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讀者들의 便宜를 考慮한 것으로는 「圖示」를 많이 活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83, 171, 177, 178, 179, 190, 207, 596, 597). Baur 도 그의 Lehrbuch (§36 III)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理解를 돕는 데 큰 效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活字의 番號를 바꿈으로써 굵은 活字로 된 部分만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 하여, 讀者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能率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判例를 豊富히 引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였거니와, 著書도 國內의 整書는 대체로 빠짐없이 引用하고 있다. 특히 學說에 관하여는 各學說을 각각 明快하게 설명한 다음에 著者 自身の 見解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두가지 問題를 提起하여 著者 自身이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사고 要請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첫째는 「物權의 合意로부터 物權的期待權이 발생」하는 것이냐이다(112面). 오히려 164面에서 「物權의 合意와 동시에 物權的期待權과 登記請求權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無妨하지만, 同面 最終行에 「物權의 合意로부터 物權的期待權이 생기고」라고 한 것과 112面に 같은 뜻으로 쓴 것은 果然 妥當하겠는지 疑問이다.

둘째로, 446面에 「轉傳貫란……그 傳貫權을 目的으로 하는 傳貫權을 設定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轉傳貫의 目的物이 과연 「傳貫權」이냐? 民法 第306條는 「그 目的物을 他人에게 轉傳貫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 目的物」이라는 것이 傳貫權이냐, 아니면 傳貫權의 目的物인 不動産이냐? 著者는 分明히 前者로 解釋하고 있는데, 혹시 後者로 解釋하는 편이 妥當하지 않겠는지?

(金 曾 漢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